##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67

발의연월일: 2021. 12. 2.

발 의 자: 박상혁·김성주·김윤덕

김정호 • 민형배 • 안호영

이정문 · 임오경 · 임종성

전재수 · 천준호 · 최인호

홍기원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난과 같이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에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자동차등록 관련한 전산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이 있으나 유사한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에 도 현행법에는 건설기계 전산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조건에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위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산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건설기계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3호 및 제37조제1항제9호의4 신설).

법률 제 호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제37조제1항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4.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시·도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	
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8호(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	
여야 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3.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
	당한 경우
② ~ ① (생 략)	② ~ ① (현행과 같음)
제37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	제37조(수수료 등)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수수	
료 또는 소요비용을 내야 한다.	
1. ~ 9의3. (생 략)	1. ~ 9의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9의4.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u>자</u>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